

변경대비표

- 1. 대상약관: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
- 2. 시행일 : 2024 년 1 월 1 일
- 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- 4. 변경 대비표

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<p>제 1 조~제 2 조 &lt;생략&gt;</p> <p>제 3 조(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)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(가입일 현재 만 19 세 이상 만 34 세 이하인 사람)으로서 제 1 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여야 한다. 다만,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(6 년을 한도로 한다)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 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.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입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 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.</p> <p>가.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</p> <p>나.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,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 1 조~제 2 조 &lt;좌동&gt;</p> <p>제 3 조(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)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(가입일 현재 만 19 세 이상 만 34 세 이하인 사람)으로서 제 1 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여야 한다. 다만,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(6 년을 한도로 한다)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 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.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입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 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.</p> <p>가.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,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)</p> <p>나.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 8백만원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)</p> <p>다. 소득 기준연도는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1~7 월 기간 중 가입 시 전년연도 소득도 허용한다. 단,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한다.</p> <p>라. 거주자가 「소득세법」제 12 조제 3 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,</p>	<p>■세법 및 시행규칙 개정분 반영('23.3.20)</p> <p>조세특례제한법 §91 의 20</p> <p>- 과세특례요건 완화</p> <p>■2024 년 세법개정</p> <p>조세특례제한법 §91 의 24</p> <p>- 소득요건 판단기준 개선</p>

<p>②~ ④ &lt;생략&gt;</p> <p>제 4 조~제 5 조 &lt;생략&gt;</p>	<p><u>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는 비과세소득만 있는자로 보지 않는다.</u></p> <p>②~ ④ &lt;좌동&gt;</p> <p>제 4 조~제 5 조 &lt;좌동&gt;</p>	
<p>제 6 조(가입기간 및 저축기간)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은 신규 매입체결일 기준으로 <u>2023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제 7 조~제 15 조 &lt;생략&gt;</p>	<p>제 6 조(가입기간 및 저축기간)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은 신규 매입체결일 기준으로 <u>2024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</p> <p>② &lt;좌동&gt;</p> <p>제 7 조~제 15 조 &lt;좌동&gt;</p>	<p>조특법§91 의 20, 조특령§93 의 6 적용기한 연장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&lt;부칙&gt; 2.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